

'23년 민간주도형 예비창업지원 프로그램(시드팁스) 운영사 선정계획 공고

민간 역량을 활용하여 예비창업팀 및 창업기업을 시드투자 유치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한 『2023년 민간주도형 예비창업지원 프로그램 (이하 “시드팁스(Seed Incubator Program for Seed-funding)”)』의 운영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
2023년 4월 19일
중소벤처기업부 장관

※ 본 공고는 **예비창업팀 및 창업기업을 발굴·육성·지원할 시드팁스 운영사를 모집**하기 위한 공고입니다. 예비창업팀 및 창업기업 모집은 '23년 상반기 중 추진할 예정이며 운영사를 통한 추천방식으로 운영됩니다.

1. 사업 개요

사업개요

-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여 예비창업팀 및 초기창업기업에 팀 빌딩, 보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시드투자 유치 수준까지의 성장을 지원

* '23년 예산 : 60억원 / 지원규모 : (예비)창업기업 55개사 내외

선정규모 : 4개사 내외 (최종선정 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)

지정기간 : 1년 (최초 협약기간 1년, 평가 결과에 따라 2년 단위로 연장)

* '23년 협약기간(안) : '23.6.1.~'24.5.31.

** 단, 향후 계속사업 편성 여부에 따라 사업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성과평가 및 협약연장평가 등의 결과에 따라 운영사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

□ 사업내용

- 운영사는 '시드팁스 연계 배치프로그램'을 운영하고 해당 프로그램에 참가할 (예비)창업기업을 자율적으로 모집 및 선정
 - (예비)창업기업에 팀 빌딩, 보육 공간 및 보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, 시드팁스 사업화자금을 지원받을 창업팀을 선발하여 주관기관에 추천*
- * 추천규모 : 운영사별 배정된 선정권의 1.2배수 내외
- 주관기관은 운영사에서 추천한 창업팀을 평가하고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하여 사업화 자금을 지원
 - * 사업화 자금 규모 : 기업당 50백만원
- 운영사는 시드팁스 사업화 자금을 받은 기업 중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1억원 이상의 시드투자를 집행하고 팁스 프로그램 등에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

2. 신청자격 및 요건

□ 신청자격

- 「벤처투자법」상 창업기획자 또는 이에 준하는 예비창업팀 및 극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보육·투자역량을 보유한 국내 소재 투자사
 - * 운영사를 주간사로 하여 협력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 가능
단, 업무협약서 등 증빙을 통해 동 사업 관련 협력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
 - ** 주간사 : 투자재원 및 투자결정권을 보유한 곳으로 컨소시엄을 대표하는 기관
예) 창업기획자(주간사) + 대학 창업지원단(창업팀 발굴) + 민간 기업(공간 제공)

□ 신청요건

※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

- ① (전담조직 구성) 운영사 내 시드팁스 수행을 위한 총괄책임자 1인, 전담인력* 2인 이상으로 구성

* 전담인력은 '시드팁스' 업무 참여율이 100%인 수행인력을 의미

② (보육 프로그램 운영 실적) 최근 3년간('20년~'22년) 운영사 고유의 보육 프로그램*을 3회 이상 운영한 실적 보유

* 신청기업(운영사)이 자체적으로 (예비)창업기업을 모집 및 선정하고 보육하는 프로그램으로 정부, 지자체 등의 위·수탁 프로그램 운영 실적은 인정되지 않음

③ (보육공간 확보) 운영사 내·외부에 (예비)창업기업 입주 등을 위한 공간 500m²* 이상 보유 또는 협력기관을 통해 확보

* 창업기업을 위한 교육장, 회의실, 입주공간 등으로 운영사 운영인력의 사무공간은 제외

** 보육공간을 별도로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의 계약종료일이 운영사-주관기관-전담기관과의 협약 종료일 이후여야 함

④ (투자역량 보유) 시드팁스 지원기업에 대한 투자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정 재무상태*로 투자 결정권 및 투자 재원(3억원 이상)** 보유

* 재무제표('20년~'22년, 3개년)를 확인하여 '자본잠식 상태'인 경우 지원 제외

** 운영사가 자체 조성하거나 민간 VC 등을 통해 조성한 펀드로 시드팁스 지원기업에 투자가 가능하여야 함

*** 협력기관은 운영사와 창업기업에 공동으로 투자할 수 있으며 총 투자금액의 49%까지 허용

□ 신청 제외대상

○ 신청기관(또는 대표자)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 신청을 제한

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관계 법령·지침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

②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부도, 화의,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곤란한 경우

* 단 신청·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자,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신청 가능

③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경우

④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

⑤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

⑥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
3. 운영사의 의무 및 역할

① 시드팁스 연계 배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

- 운영사의 배치형 보육 프로그램*을 시드팁스와 연계하여 협약기간 중 1회 기획 및 운영

* (예비)창업기업을 일괄적으로 모집·선발하여 배치(Batch, 집단)를 구성하고 해당 배치 안에서 경쟁을 통해 성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3~6개월 간 (예비)창업기업에 멘토링, 창업교육, 데모데이 등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설정한 목표를 달성한 팀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

** 프로그램 내에 팀 빌딩 과정을 포함하여 기획·운영하는 경우 가점(1점) 부여

② 보육공간 제공

- 시드팁스 연계 배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(예비)창업기업에 교육장, 회의실, 입주 공간 등을 창업 및 경영활동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

③ (예비)창업기업 추천

- 운영사 자체 기준 및 절차에 따라, 시드팁스 연계 배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 중 사업화자금 지원대상을 선발하여 주관기관에 추천
- 추천 규모는 운영사별 배정된 선정권의 1.2배수 내외이며 최종 지원 기업은 주관기관에서 평가를 진행하여 선정

④ 의무투자 집행

- 최종 선정된 (예비)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예비창업팀 중 30% 이상, 초기창업기업 중 70% 이상에 1억원 이상 시드투자를 집행
- 투자대상은 운영사 자체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선정하며 투자는 최종 선정된 (예비)창업기업의 시드팁스 협약종료 1개월 이내에 완료

< 의무투자 집행 기준 >

투자 집행 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운영사는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운영사별 정부지원금 총액 이상을 창업팀(기업)에 투자하여야 함 • 운영사별 선정 창업팀(기업) 형태에 따른 '의무투자 비율'을 충족하여 투자하여야 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(예비창업팀) 선정 창업팀의 30% 이상, (초기창업기업) 선정 창업기업의 70% 이상 단, 소수점 이하 자리 산출 시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'올림' 처리하여 계산 • 창업팀(기업)당 최소 1억원 이상을 투자하여야 함 • 창업팀(기업)당 운영사 지분은 최대 20% 미만으로 설정하여야 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창업기업 대표자 및 소속 직원 지분은 60% 이상 • 창업팀(기업)의 협약종료 후 1개월(선정 차수별 상이)까지 투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함
<p>※ 기타 유의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투자계약 체결 전, 주관기관을 통해 투자적절성 검증위원회 개최 요청 필수 • 창업기업의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 이전에 보유하고 있는 창업기업의 주식은 매각 불가 • 가점(우대)사항 충족을 위해 의무투자 비율 이상의 투자를 제시한 경우, 해당 계획 이행 필요 	

* 의무투자 관련 세부내용은 '(참고2) 의무투자 이행 예시' 참고

5 (예비)창업기업의 사업수행 지원

- 최종 선정된 (예비)창업기업이 협약기간 내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점검, 성과관리 등을 후속 지원
 - * (예비)창업기업의 사업 추진현황 점검 등을 위한 보고서 작성 및 제출, 성과 조사 및 관리 등 지원

4. 지원내용

- ※ 사업 예산, 지원 규모, 운영사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운영사별 차등 지원
- ※ 운영사 연간 성과평가, 협약 연장평가 등의 결과에 따라 지원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

□ (예비)창업기업 선정권 부여

- 운영사 선정평가 결과 및 운영사별 보육 가능한 (예비)창업기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(예비)창업기업 선정권(5개~10개 내외) 부여
- 운영사는 부여된 선정권의 1.2배수 내외를 시드팁스 지원대상으로 추천할 수 있으며
 - 추천시기는 운영사별 시드팁스 연계 배치 프로그램 일정에 따라 상이하게 운영할 수 있음

□ 운영비 지원

- 운영사별 부여된 선정권 수에 따라 “선정권 수 x 45백만원”을 시드팁스 연계 배치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원

□ 운영사가 추천하여 선정된 (예비)창업기업에 사업화자금 지원

- 최대 50백만원을 지원하며 시제품 제작, 지식재산권 취득, 마케팅 활동 등에 집행 가능

5. 신청 및 접수

□ 신청기간 : '23년 4월 19일(수) ~ 5월 10일(수) 16:00까지

□ 신청방법 : K-Startup 누리집 (www.k-startup.go.kr)에서 온라인 신청·접수
< 신청절차 >

- ① 회원가입 (신청기관 대표자 명의) → ② K-Startup 로그인 → ③ 사업신청 클릭
- ④ “2023년 민간주도형 예비창업지원 프로그램(시드팁스) 운영사 모집공고” 클릭 →
- ⑤ 약관 확인 및 동의 → ⑥ 기업정보(일반현황 및 인력정보) 입력 → ⑦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업로드(용량 제한 100MB) → ⑧ 제출완료 클릭

* 사업신청내용 확인 및 수정은 [창업사업통합관리시스템-사업신청-사업신청내역조회] 메뉴에서 신청 종료 시까지 가능

□ 제출서류

No.	제출서류
1	운영사 신청서
2	운영사 사업계획서
3	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(말소사항 포함)
4	법인정관(원본대조필)
5	법인 인감증명서
6	최근 3년간 재무제표(감사보고서 또는 직전분기말 재무제표 확인원)
7	총괄책임자 및 참여 전담인력별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(과거 내역 포함)
8	투자재원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
9	배치 프로그램 운영실적 확인을 위한 배치 프로그램 운영 결과보고서 등
10	확보된 보육공간 확인을 위한 임차계약서 등
11	개인정보 수집·활용동의서
12	가점(우대)사항 증빙서류 (해당 시)

* 제출서류는 K-startup 누리집을 통해 신청기한 내에 반드시 "최종제출"하여야 함

** 제출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일부를 누락하는 경우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으며 선정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

6. 평가 및 선정

□ 평가절차 : '서면평가 → 현장실사 → 발표평가'를 통해 선정

< 시드팁스 운영사 선정 절차(안) >

사업신청·접수	요건검토 및 서면평가	현장실사	대면평가	최종선정
K-스타트업	주관기관 평가위원회	주관기관 점검반	주관기관 평가위원회	전담기관 사업운영위원회
~'23.5.10.(수) 16:00	5월 3째주 ('23.5.15~5.19.)	5월 4째주 ('23.5.22~5.26.)	6월 1째주 ('23.5.29~6.2.)	6월 1째주

*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일정은 추진단계별 별도 안내 예정

□ **평가 세부내용**

- **(서면평가)** 신청기업의 사업계획서를 통해 프로그램의 적절성, 성과 관리의 적절성, 네트워크 역량 등을 종합 평가
 - * 주요 평가항목(안) : 전담인력 및 외부 네트워크 활용계획, 보육단계에 맞는 특화 프로그램의 적절성(멘토링 품질, 브랜드평판, 네트워킹 행사), 성과관리의 적절성, ESG경영 실행 및 계획 여부, 프로그램·투자역량·협업 네트워크 역량 등
- **(현장실사)** 제출된 자료 및 증빙서류에 대해 현장 확인하고 오류·수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서면평가 결과 등 정정 반영
 - * 현장실사 점수는 없으나 대면평가 시 참고로 활용될 수 있음
- **(대면평가)** 사업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 전략, 실행방법, 성과 관리계획 등 추진내용 발표를 통한 평가 (발표 15분, 질의응답 10분)
 - * 주요 평가항목(안) : 창업지원 의지와 역량, 전담인력 및 외부 네트워크 확보 현황 및 활용계획, 특화프로그램의 구체성·차별성·실현 가능성 등
 - ** 발표자 : 신청기관(주간사) 대표자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사결정이 가능한 센터장 또는 본부장급 이상인 자로 대체 가능

□ **최종선정** : 서면평가(40%), 대면평가(60%) 결과를 종합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고 전담기관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최종선정

※ 종합평점 = 서면평가(40%) + 대면평가(60%) + 가점(최대 7점)

□ **가점(우대)사항 (최대 7점)**

구 분	내 용	가 점
컨소시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협업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 	1점
배치형 프로그램 운영 이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운영사(주간사만 해당)가 배치 프로그램을 3년간 연 1회 이상 운영한 경우 (공고 마감일 기준, 이력 증빙 필수) 	1점
팁스운영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팁스운영사 선정(공고 마감일 기준 협약유지 중인 기업) 	1점
팀빌딩 지원 계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운영사(주간사만 해당)의 배치프로그램에 팀빌딩을 포함하여 운영한 경우 (공고마감일 기준, 이력 증빙 필수) 	1점

구 분	내 용					가 점
의무투자 이상 제시	구 분	의 무	90%이상	70%이상	50~70%	40~50%
	예비창업팀 구성·발굴 중점형	30%이상	3점		2점	1점
	초기 창업기업 발굴 중점형	70%이상	1점	-		
* 세부계획 제안 시 가점을 先반영하고, 사업종료 후 준수 여부에 대하여 성과평가에 적용						

6. 유의사항

- 본 공고문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
-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거나 변경 세부내용은 별도 지침 또는 세부 관리기준을 따름
 - * 「창업사업화 통합관리지침」 및 「민간주도형 예비창업지원 프로그램(시드팁스) 세부관리기준」을 적용
- 사업 신청은 운영사 대표자* 명의로만 신청이 가능
 - * 주간사 역할을 수행하는 신청기관의 장 (협업기관(컨소시엄)의 장 또는 전담조직의 장 명의로 신청 불가)
-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는 접수 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하며, 마감 이후에는 수정·보완 및 추가 제출 불가
-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대한 오류 등의 허위 사실 기재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선정 이후에도 지정을 취소함
- 사업 운영기간 중 중대한 협약위반 사항 또는 성과 부진 등의 사유 발생 시 관련 규정에 의거 중도 해약될 수 있음
- 선정된 기관은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계좌 개설 필수 및 창업사업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지출(회계처리)이 가능하여야 함
 - * 추후 중기부 창업사업통합관리시스템 미사용 시, 사업수행 불가 및 협약 해지

- 전담조직 설치 등 신청요건은 최종 선정통보일 이후 1개월 이내 계획대로 이행하여야 함
 - * 의무사항 이행내용을 반영한 수정사업계획서를 협약체결 시 제출
 - ** 기한 내 관련요건 미 충족 시 선정 취소 또는 협약 중도 해약 가능
- 사업 운영기간 내 총 사업비 기준 미집행 비중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환수조치 될 수 있음
- 사업 선정 후,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향후 동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
-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기관은 신청 불가
- 시드팁스 주관기관의 대표자(대표회사)가 운영사로 신청하는 경우 최종 선정에서 제외되며, 제외 시 차순위 기관을 선정

7. 문의처

- K-startup 시스템 문의(가입, 신청 · 접수 등)
 - 국번 없이 1357

사업 관련 문의

구 분	담당 기관	전화번호
주관기관	(사)한국초기투자기관협회	02-3462-2230
전담기관	창업진흥원 민관협력창업실	02-2039-1354

□ 개요

- (추진목적) 민간 부문(창업기획자 등)의 선별·보육 역량을 활용, (예비)창업팀이 창업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
- (지원대상 및 규모) (예비)창업자* 55팀(사) 내외
 - * 예비창업자 및 투자유치 이력이 없는 초기 창업기업 (업력 3년 이내)
- (예산규모) 60억 원

□ 지원내용

- 정부가 민간 운영사*를 선정하면, 운영사가 창업팀의 선발부터 보육, 시드 투자까지 책임지는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
 - * 「벤처투자법」에 따른 창업기획자 또는 이에 준하는 보육·투자 역량을 보유한 기관
- (민간) 창업팀 구성*·추천 및 프로그램 운영(3~6개월 내외)을 담당하고, 우수 창업팀 대상으로 1억원 이상 시드 투자 집행
 - * ① 구성원(개발·연구, 경영·마케팅 등)을 개별 모집한 후 운영사가 팀빌딩 과정을 거쳐 창업팀을 구성·추천, ② 이미 결성된 창업팀을 추천하는 경우 모두 허용
- (정부) 운영사 선정·평가, 창업팀 대상 사업화 자금(최대 5천만원) 및 운영사 대상 프로그램 운영비 일부 지원

□ 추진성과

- '22년 예비·초기 창업기업(팀) 30개사 중 참여기업의 70%인 21개사가 운영사로부터 시드 투자유치(총 32억원)
- 또한, 후속투자 유치(5개사, 6억원), 고용(기업당 2.1명 신규고용, 총 64명), 해외법인 설립(4개사) 등의 성과 달성

□ 시드팁스 운영사 의무투자

- (투자비율) 예비창업팀은 선정 창업팀의 30% 이상, 초기창업기업은 선정 창업기업의 70% 이상에 투자
- (투자기준) 운영사에 배정된 운영비 이상의 금액을 창업기업(팀)에 투자

□ 의무투자 이행 예시

※ 시드팁스 운영사 A,B,C가 모두 15개의 창업기업 추천권을 배정받아 운영되는 경우, 운영사 형태 구분 및 의무투자 이행 의무 기준은 아래와 같음

- (A 운영사) 15팀(개사) 중 예비창업팀 11팀, 초기창업기업 4개사 ⇒ “예비창업중점형 운영사”, 7개사에 7억원 이상 투자
 - * 예비창업팀 4팀 이상 (총 11팀x30%=3.3 →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), 초기창업기업 3개사 이상 (총 4개사x70%=2.8 →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)에 투자
- (B 운영사) 15팀(개사) 전원 초기창업기업으로 구성 ⇒ “초기창업중점형 운영사”, 11개사에 11억원 이상 투자
 - * 초기창업기업 11개사 이상 (총 15개사x70%=10.5 →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)에 투자
- (C 운영사) 15팀(개사) 전원 예비창업팀으로 구성 ⇒ “예비창업중점형 운영사”, 5개팀에 5억원 이상 투자
 - * 예비창업팀 5팀 이상 (총 15팀x30%=4.5 →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)에 투자

< 운영사 별 의무 투자 이행 예시 >

구 분	A 운영사	B 운영사	C 운영사
배정 추천권	■ 총 15장 예비창업팀 11팀, 초기창업기업 4개사	초기창업기업 15개사	예비창업팀 15개사
배정 운영비	■ 총 495백만원 (=15개사x기업당 45백만원)		
투자 의무	7개사*, 7억원 이상 * 예비 4팀, 초기 3개사	11팀, 11억원 이상	5팀, 5억원 이상

참고3

운영사 사업비 집행기준

비목	세목	내 용	정부지원금	
			운영사	협력기관
창업 프로그램 운영비	배치 프로그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운영사 고유의 배치 프로그램 운영비 	20% 이상	
	기타 프로그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데모데이, 기타 창업 프로그램 운영비 		
일반 수용비	일반수용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당해연도 동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관 운영 성격의 예산으로 사업 운영 관련 각종 부대비용으로 집행 	배정예산 범위 내	50% 이상
	공공요금 및 제세			
	특근매식비			
	복리후생비			
여비	국내여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동 사업과 관련한 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참여 인력의 국내·외 여비 		
	국외여비			
회의비	업무추진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동 사업과 관련한 간담회, 회의, 업무협의 등에서 소요되는 회의비 	5% 이내	
인건비	인건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동 사업에 참여하는 전담인력 및 겸직인력 인건비, 단기 근로자 수당 등으로 운영사의 보수 규정에 따라 집행 	70% 이하	

* 향후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동 사업 관리기준 개정 시, 개정사항 준용